

비밀(보안) 유지 계약서

협력 업체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128-2

전 화 : 043-269-4895 팩 스 : 043-269-4898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 공단 2다 302에 주사무소를 둔 아토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함) 와 상기 협력 업체(이하 "을" 이라 칭함)는 2001 년 4 월 10 일 (이하 "계약 발효일" 이라 칭함)부로 다음과 같이비밀(보안) 유지 계약서를(이하 "계약서" 라 칭함) 체결 한다.

배경

"갑"과 "을"은 반도체 전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평가 및 개발에 필요한 설계, 발명, 제품,제조, 공정, 소프트 웨어, 서비스, 도면, CAD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영업 데이터, 사업 계획, 종업원, 거래선, 재정 등과 관련된 정보, 기술 자료, 비밀 정보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상호 교환 하기로 한다.

내용

제 1조 비밀 정보 소유권

"갑"과 "을"은 각각 소유한 비밀 정보가 이 정보를 제공한 측의 유일하고도 독점적인 소유 권리 하에 있음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제 2조 사용 권한

"갑"과 "을"은 제공된 모든 비밀 정보가 상기 배경에 명시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제공한 측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될 수없고 각 회사 자체에서 요구되는 비밀 정보 수준으로 비중을 두어 다루어지고 보호 되도록 하는데 동의 한다.



제 3조 제외 대상

- 아래의 경우에는 비밀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 가. 주지의 사실로 발표된 정보인 경우
 - 나. 본 계약 하에서 정보를 공개 한 후 정보 제공측으로부터 받은 정보 가 출판에 의하거나, 정보를 수령한 측의 잘못 없이 주지의 사실로 된 경우
 - 다. 정보를 수령한 측이 정보를 받을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며 정보를 제공한 측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비밀유지 의무 하에서 획득한 정보가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 라. 제 3자에 의해 비밀 유지 의무 없이 독립적으로 공개되고 또한 제 3 자는 비밀유지 의무 하에서 정보를 제공한 측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제 4조 종업원 준수 사항

"갑"과 "을"은 개발과 관련하여 각 사의 종업원에게만 비밀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수한 비밀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

제 5조 비밀 유지 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 내용이나 본 계약 하에서 제공된 비밀 정보를 계약 발효일로 부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며, 어떠 한 정보도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

제 6조 실시권 제한

본 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에 대한 임의의 권리나 지적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 7조 계약 기간 및 종료 조건

- 가. 본 계약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쌍방협의 철회시 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나. "갑"과 "을" 양자는 본 계약 내용을 위반 하는 경우, 상대방이 본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때 위반측은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해 이를 배상해야 하며 상대방은 위반측에 대하여 모든 법률상의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제 8조 준거법





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해석 한다. 제 9조 내용 수정 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상호 서면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사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 후1부 씩 보관 한다.

2001년 4월 10 일

아토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상 영 코닉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기로 (인)



